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 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550,000원 이내⇒ 월 900,000원 이내)

○ 보조활동비 신설(월 200,000원 이내)

나.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일부 개정(숙박비-별표1)

○ 의장·부의장(1야당 41,000 ⇒ 1야당 46,000원)

○ 의원(1야당 22,000 ⇒ 1야당 25,000원)

다.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일부 개정(숙박비-별표2)

○ 의장·부의장(1야당 가등급 151 ⇒ 166, 나등급 109 ⇒ 120,

다등급 84 ⇒ 92, 라등급 72 ⇒ 79)

○ 의원(1야당 가등급 132 ⇒ 145, 나등급 86 ⇒ 95,

다등급 64 ⇒ 70, 라등급 56 ⇒ 62)

###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나.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4. 검토의견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명예직 규정의 삭제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 경비등을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인상액을 반영 현실화하여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